

대구대학교 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임용규정 제3장 제16조 내지 18조에 의거 교원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산학협력교원 채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총원) ①대학(원) 또는 기관의 장은 관련학부(과) 및 기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산학협력교원 총원을 요청한다.

②총원대상 학부(과), 기관 및 인원은 총장이 결정한다.

③총장은 총원요청을 한 경우 이외에도 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원대상 학부(과), 기관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④산업체 경력 및 산학협력 능력이 우수한 전문경력인사를 특별채용 할 경우엔 제5조 내지 제 10조의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공고) 공채를 통한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서 접수) ①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접수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본교 홈페이지)으로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교원초빙지원서(별지서식 1)
2. 산업체경력사항(별지서식 2)
3. 산학협력활동 계획서(별지서식 3) : A4 3매 분량
4. 연구실적 목록(별지서식 4)

제6조(심사절차) ①산학협력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심사
2. 서류심사
3. 학과 면접심사
4. 본부 면접심사
5.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제7조(지원자격심사 및 실적물 접수) ①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학력, 경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可”로 한다. 이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별지서식 5)에 의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지원자격심사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부합되는 경우 3인 미만인 분야도 채용을 진행할수 있다.

1.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분야 채용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국고사업 대비, 평가인증 또는 (전임)교원 확보를 지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④지원자격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아래 각 호의 실적물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단, 우편물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한다.

1.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경력증명서 각 1부
3.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4. 연구 및 산학 실적(물)중 대표실적 3편

제8조(서류심사)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력, 산업체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또는 기관 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전공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부는 전공교수만 심사에 참여한다.

③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서류심사는 「산학협력교원 서류심사조서」(별지서식 6)에 의한다.

제9조(면접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며 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단,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초빙분야는 2배수 이내로 한다.

제10조(학과면접심사)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학부(과) 소속 교원 또는 기관소속 교원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전공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부는 전공교수만 심사에 참여한다.

③ 면접심사는 「학부(과) 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7)에 의한다.

④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본부면접심사)①본부면접심사위원은 총장,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본부면접심사는 「본부 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8)에 의한다

제12조(제청예정자 결정) ①총장은 서류심사, 학부(과)면접심사, 본부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배수의 범위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 심사별 반영비율은 서류심사 40%, 학부(과) 면접심사 30%, 본부면접심사 30%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경력환산) ① 산학협력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해 100% 인정한다. 단 비전임은 70%로 환산한다.

② 경력연수는 학사학위 취득 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취득 후부터 계산한다.

③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교원의 경우 석사 학위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직급 부여) 임용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15조(심사결과 공개) 산학전담교원채용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한 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

제16조(보칙) ① 산학전담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산학협력교원임용규정, 교원특별채용 지침을 준용한다.

| | | |
|-----------------------------|---|---|
| 이 지침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
|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 칙 |